

## ●산림청고시 제2023-6호

「산지관리법」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준보전산지를 보전(공익용)산지로 지정하고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.

2023년 01월 16일

산림청장

### 보전산지 지정 고시

1. 관계도면 : 생략 (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,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같음)

가. 보전(공익용)산지

행정구역의 명칭		도면의 명칭	도엽의 번호	구역의 표시
대전광역시	중구	대전077	NJ52-13-20-077	공익용산지
대전광역시	중구	대전078	NJ52-13-20-078	공익용산지
대전광역시	중구	대전086	NJ52-13-20-086	공익용산지
대전광역시	중구	대전087	NJ52-13-20-087	공익용산지
대전광역시	중구	대전088	NJ52-13-20-088	공익용산지
대전광역시	대덕구	대전027	NJ52-13-20-027	공익용산지
대전광역시	대덕구	대전047	NJ52-13-20-047	공익용산지
대전광역시	대덕구	대전057	NJ52-13-20-057	공익용산지
대전광역시	대덕구	대전059	NJ52-13-20-059	공익용산지
대전광역시	대덕구	대전069	NJ52-13-20-069	공익용산지
경기도	파주시	김포010	NJ52-9-10-010	공익용산지

※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및 「산지관리법」 제5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 (<http://www.forestland.go.kr>) 및 토지이음 (<http://eum.go.kr>)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.

2. 열람장소

보전산지 지정 표시 관계 도·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.

부 칙

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② 보전산지 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.